

(갑종재산의 대부)

① 갑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제15호.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 관할구역안의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② 갑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4호.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중)

○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는 95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로 99년 11월 시정개발연구원의 여의도지역 전략개발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여의도 부지 개발계획으로 2001년 5월 부지매각 임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앞으로 11월말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동 부지가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동 시설을 중기협이 계속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시용 시설부지로 매각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기한을 2001.12.31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것은 2001.12.31이후에도 매각이 지연되었을 경우 또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절차상 어려움이 우려되며, 동의안 제출이 늦어져 지난번 기획예산실의 경우는 행자부 정원승인관계로 이해가 되나, 이번 산업경제국의 경우는 의회의 안전처리 절차나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에 시간적 제약에 심도있는 심의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1명,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부지 무상대부동의안

서울시에서 부지제공 및 행정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설설치 및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95.5.29 체결한 협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001.7.1부터 2001.12.31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동 부지를 무상대부하는 데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무상대부 재산현황

○ 명 칭 :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부지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3-1 일부(구 안보전시장)

○ 규 모 : 대지 2필지 26,562㎡(8,035평)

* 시설물 : 3,913평(전시장 2,818평, 판매장 608평, 기타 487평)

(전시장 : 에어돔,

판매장 및 기타 : 가설건축물)

○ 대부기간 : 2001.7.1~2001.12.31까지

○ 대부조건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등 우리시에 필요한 조건 부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는 즉시 이에 응할 것

제2호 :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참고자료

□시설개요

○ 규 모 : 대지 8,035평

건물 3,913평(전시장 2,818평, 판매장 608평, 기타 487평)

○ 설 치 : '95.7~'96.7('96.8.16개장)

-서울시 : 부지제공(부지 무상사용승인),

행정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시설설치 및 운영 ○ 시설비 : 4,881백만원(중기협중앙회에서 삼성그룹 협찬으로 충당) <input type="checkbox"/> 운영실적 ○ 전시장					
구 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전시회수	19회	49회	46회	48회	54회
참여업체수	1,380 업체	4,530 업체	4,495 업체	3,283 업체	3,652 업체
관람인수	234 만명	176 만명	177 만명	129 만명	105 만명
○ 판매장					
구 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입점업체수	44업체	41업체	49업체	32업체	31업체
판매실적	23억원	49억원	55억원	34억원	19억원
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00	2001년 6월 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 제2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2001년 6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가. 제안이유					
○ 2001년 예산에 편성된 부채상환목적예비비 2,508억원을 2000년말 현재 시전체 부채의 71.0%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집행방법 : 자본금으로 출자					
-시에서 공사에 지원한 출자금은 납입자본금으로 누적되며, 공사지분은 출자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본금으로 출자					
※ 예산과목 :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이전사업비, 출자금					
○ 지원원칙					
-만기도래 되는 고이율 부채 우선상환					
·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고이율부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전체 부채규모 감소를 위한 부채상환목적예비비 목적상 타당하며, 양공사 자금운용면에서도 유리					
-잔액은 양공사 2000년 운영개선실적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					
· 부채대책 및 부채상환목적예비비편성 취지에 따라 양공사 운영 개선실적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 촉진					
○ 출자규모 : 총 2,508억원(지하철공사 1,396억원, 도시철도공사 1,112억원)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고이율 부채중 만기가 도래되는 지하철공사의 1,100억원과 도시철도공사의 800억원을 상환토록 배분하고					
-잔액 608억원은 2000년도 지하철 양공사 운영개선실적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하철공사 296억원, 도시철도공사 312억원을 추가 배분하여 고이율 신규차입 규모를 축소토록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종식)					
<input type="checkbox"/> 개요					
○ 동 출자안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2001. 6. 9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0호로 2001. 6. 11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동 출자안의 제안사유는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채상환목적 예비비 2,508억원을 2000년말 현재 서울시 전체부채의 71.0%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출자코자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는 부채상환목적예비비로 편성된					